

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세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)

본 세칙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원칙)

- ①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이 있다.
- ③ 본 대학원 재학생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.
 1. 현재 2, 3학기 재학 중인 자
 2. 징계를 받거나 현재 휴학을 하지 않은 자
 3. 학생회비를 낸 자

제2장 총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

제3조 (명칭)

공식적인 명칭은 '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'이다.

제4조 (지위와 역할)

- 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, 다음 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사업 전반을 총괄, 관장한다.
- ② 선거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이다.
- ③ 시행세칙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이다.

제5조 (구성)

- ① 선관위는 선거일 현재의 본회 집행부로 구성한다.
- ② 총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이 되고, 부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.
- ③ 투,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.
(단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후보로 출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된다.)

제6조 (해임)

-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 1.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.
 2.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.
- ② 선관위의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의원회에 있다. 선관위 해임에 대한 발의 및 의결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안건 제출 및 의결 절차에 따른다.

제7조 (선거관리 위원장, 부위원장)

- ① 선거관리위원장(약칭 : 선관위원장)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 전원 회의를 소집, 주재하며 선관위 내의 논의를 정리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

제8조 (이의제기)

선관위 의결에 대해 후보자는 사안 당 1회에 한하여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선관위원장에 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.

제9조 (업무)

- ①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 사항들을 공고한다.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선거일정
 - 2. 후보등록 결과
 - 3. 투, 개표 일정
 - 4. 선거운동 규칙 위반사항 및 징계
 -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②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.
 - 1. 각 후보 포스터와 선거 홍보 포스터 부착
 - 2. 선거일정 현수막 제작 및 부착
 - 3.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
 - 4.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활동
- ③ 선거기간 중 각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, 준비한다.
- ④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선관위가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.
설치 장소 : 운초우선교육관 1층, 4층 게시판, 사대본관 게시판, 사대신관 게시판.
위의 장소 외에도 선관위에서 추가로 선거 공고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투,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.
 - 1. 선거인 명부 작성
 - 2.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(모바일이나 전자 투표시 제외)
 - 3. 투표소 설치 및 관리 (모바일이나 전자 투표시 제외)
 - 4.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
- ⑥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후보자 이외의 여러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.
- ⑦ 총학생회 선거 전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.
- ⑧ 선거전반의 유권해석과 징계, 권고 및 이의제기의 처리를 총괄한다.
- ⑨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0조 (선관위 권한)

- ① 시행세칙을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한다.
- ② 후보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및 조정권을 갖는다.

- ③ 선거시행세칙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.
- ④ 각 후보자가 본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선관위가 본 세칙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- ⑤ 후보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 (선거운영비용)

- ① 선관위의 운영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충당한다.
- ② 선관위는 총학생회 예산에서 일정 액수를 각 후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 그 금액은 각 후보자와 협의 하에 선관위에서 정한다. (후보 등록시 포스터 영수증을 제출하고, 투표일 전날 저녁 8시까지 소정 양식의 결산보고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한다.)

제3장 선거 일정

제12조 (선거일정 및 선거 공고)

- ① 등록기간, 투표, 개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일정과 전자투표, 모바일투표 등 선거 방법은 총학생회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. 단,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에 관한 결정은 선관위에게 위임한다.
- ②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선거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,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.
- ③ 부재자선거 등의 세부적인 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.
- ④ 선거 공고는 후보자 등록 마감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후보자 등록)

- ①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: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.
- ② 후보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.
 - 1. 선거인 20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
 - 2. 후보자 약력, 후보자 인물사진 (해상도 300dpi 이상의 file)
 - 3. 재학증명서 1부
 - 4. 학생회비 납입 확인 1부 (선관위에서 확인)
 - 5. 선거용 포스터 A1사이즈 8부 (해상도 및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 있음)
- ③ 후보자 등록 서류는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. (제출 기한 내 발송에 한함)
- ④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전체회원에게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.
- 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출석,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공대표 중에서 한 명을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, 이 경우 같은 전공이 연이어서 총학생회장에 선출될 수 없고, 현 총학생회 회장, 부회장 및 집행부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이 없다.

제14조 (선거운동기간)

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인 공고 당일 13시부터 투표일 전 24시까지로 한다.

제15조 (선거인명부 작성)

-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총학생회 회원을 기재하는 명부이다.
- ② 선거인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선거 공고일로 한다.
- ③ 선거인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.

제16조 (투표 및 개표)

- ① 투표기간 :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.
- ② 개표 :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.
- ③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 공고 : 개표 마감 직후에 하도록 한다.

제4장 선거운동규칙

제17조 (선거운동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- 1.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, 휴학생을 제외한 사람
- 2.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
- 3.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(총학생회 집행부원)
- 4. 교육신문 편집장 및 총학생회 감사 (단, 본인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제한되지 않음.)

제18조 (선거운동 장소)

- ①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홍보물 부착, 유세, 집회는 학교 내로 한정한다.
- ②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, 선관위의 결정이 있을 경우 학외 선거운동도 가능하다.

제19조 (후보자간 회의)

- ① 후보자간 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, 선관위 원장과 각 후보자로 구성된다.
- ② 선관위는 후보자간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후보자 간의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.
- ③ 선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후보자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선관위원장의 후보자간 회의 소집통고를 받고도 불참한 후보자는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.
- ⑤ 선거제척에 없는 경우나 기타 협의 사안의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합의를 한 후 선관위원장에게 1시간 이내 통보하면 실행이 가능하다.

제20조 (유세)

- ① 유세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각 후보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유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후보자간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21조 (홍보매체)

- ① 포스터 : 홍보 포스터는 후보자에게 제출 받아 선관위에서 같은 규격, 같은 양으로 부착한다.
- ② 현수막 : 한 후보자 당 현수막은 2개 이내로 한다.
- ③ 온라인 : 온라인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선관위가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, 운영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한다. 이외 홈페이지 운영에

대한 세부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
④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류의 홍보매체는 선관위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.

제22조 (부정선거운동)

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.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.

1. 매수 및 이해 유도
2. 당선 무효 유도
3. 선거의 자유 방해
4.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
5. 홍보 시설 방해
6. 투표권 및 투표 절차 방해
7. 선관위 방해
8. 허위 사실 유포
9. 후보자 비방
10. 선관위원의 선거 운동 참여
11. 금품살포
12. 사전 선거 운동

제5장 투표

제23조 (투표일 및 투표시간)

① 투표일정은 제12조에 의거한다.

② 투표시간은 투표일 오전 9시~오후 6시이다. 단, 인력이나 제반 기후조건 등에 의해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.

제24조 (투표소 및 투표 관리위원)

①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, 투표소를 설치한다. (모바일투표의 경우 투표소가 없어도 된다.)

② 각 투표 관리위원은 반드시 각 후보자가 지명하고 선관위가 인정한 각 1인 이상으로 하되, 각 후보자 동수로 구성하며,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이름표를 소지한다. 한 투표함을 3인 이상의 투표 관리위원을 배치하되,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도 있다.

③ 투표 관리위원은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, 투표참여 호소 발언 외에 일체 발언을 할 수 없으며,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표자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.

④ 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함, 잔여 투표용지와 모든 투표소 기자재를 정리하여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한다.

제25조 (투표 절차 및 행위)

① 투표 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 → 선거인명부 검색 → 관리위원이 투표자 신상 확인(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음) → 투표자 직접 서명 → 투표용지 배부 → 투표자가 지정된 기표소에서

기표 → 투표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

② 전자 투표, 모바일 투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선거사이트 접속 → 온라인투표 준수사항 동의 → 로그인(학번+이름) → 투표인증번호 입력(포털에 등록된 전화번호) → 투표 시작 → 투표 완료

제26조 (재투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.

1. 투표함 분실
2. 선거인 명부 분실
3. 개표 전 투표함 개봉
4.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중대한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

제27조 (연장투표 및 결선투표)

① (연장투표) 선거 관리상의 이유로 연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하되, 기간은 본 투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, 2회 이상 실시하지 못한다.

② (결선투표)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선되지 않을 시, 최다득표 후보자와 다득표 후보자와의 표차가 오차의 두 배 내에 있는 후보자들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.

제6장 개표

제28조 (개표)

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.

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
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원장이 본다.

④ 개표위원들은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람들로 후보자에서의 지원을 받아 구성한다.

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(정전, 심각한 장내 소란 등)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,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.

⑥ 각 후보자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간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유권해석을 내린다.

⑦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29조 (당선 및 당선공고)

① 최다득표 후보자와 차점득표 후보자와의 표차가 오차의 수를 초과해야만, 최다득표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다.

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, 가능한 신속히 각 게시판을 통해 개표결과를 공고한다.

③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최다득표자가 회장 당선자이다(수정). 차순위자가 부회장 당선자이다.(삭제)

제7장 징계

제30조 (징계절차)

-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(이하 선거규칙)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 의결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,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.
- ② 선관위는 선거규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대형대자보를 통하여 회원에게 알린다.
- ④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.

제31조 (주의, 경고)

- ①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.
- ② 선관위는 징계를 받은 후보자가 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주의를 줄 수 있다.
- ③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.

제32조 (최종경고)

- ① 경고가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회원에게 알린다.
- ② 최종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.

제33조 (후보자등록말소)

- ① 최종경고를 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후보자등록말소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한다.
- ② 후보자등록말소는 선관위 회의에서 의결하며 후보자등록말소안이 부결되었거나 선관위가 열리지 못했을 시에는 선관위원장은 그 의결과정을 공개하여 이를 회원에게 알린다.

제34조 (이의제기)

- ① 후보자는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8시간 이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,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한다.
- ③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.

제35조 (당선취소)

- ①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그 행위를 회원에게 공개한다.
- ② 위 1항에 해당된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는 선관위는 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고, 당선취소결정을 내렸을 경우 차점득표 후보자가 당선된다, **차차점득표 후보자가 부회장으로 당선된다.(삭제)**

<부칙>

본 시행세칙은 총학생회 선거 직전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.